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부과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19.
4. 공시송달내용
 -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 재판 절차를 진행받게 됩니다.
 - 공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74

2026. 8. 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붙 임]

연번	대상자	소재지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반송사유	비고
1	김*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층	63거5***	동삼동 865-15 (휴덤펠리)	2026.07.08. 02:33	폐문부재	사전통지
2	김*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층	63거5***	동삼동 865-15 (휴덤펠리)	2026.07.13. 03:04	폐문부재	사전통지
3	김*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층	63거5***	동삼동 865-15 (휴덤펠리)	2026.07.12. 03:36	폐문부재	사전통지
4	김*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층	63거5***	동삼동 865-15 (휴덤펠리)	2026.07.11. 02:25	폐문부재	사전통지
5	김*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층	63거5***	동삼동 865-15 (휴덤펠리)	2026.07.15. 02:39	폐문부재	사전통지
6	김*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층	63거5***	동삼동 865-15 (휴덤펠리)	2026.07.16. 03:06	폐문부재	사전통지
7	주식회사 세**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 ***호	27허4***	동삼동 116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장애인주차장)	2026.07.15. 11:56	폐문부재	사전통지
8	이*현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 ***호	156허2***	대교동2가 22-3 (명품블루파크)	2026.05.18. 17:51	폐문부재	본부과